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,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며, 공원녹지정보체계를 구축·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협의와 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, 이 경우 도시공원의 면적은 10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는 등 국가도시공원의 활성화를 위한 「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21039호, 2025. 8. 26. 공포, 2026. 8. 27. 시행)됨에 따라 도시공원 평가 업무의 위탁 및 평가 대상·기준·방법 등 세부기준을 정하고,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·변경 시 내용을 공표하도록 하며, 공원녹지정보체계 운영기관 지정 및 자료·정보의 제출 방법을 정하는 한편,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 시 공원시설 부지면적을 완화해주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, 방재공원의 설치 기준 등을 정하는 등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 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 · 폐지 등, 없음
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부터 제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도시공원 설치 및 관리에 대한 평가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평가(이하 “도시공원 평가”라 한다)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1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
2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
3. 그 밖에 도시공원 및 녹지 분야에 대한 평가 역량을 갖춘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.

③ 도시공원 평가는 설치 후 1년 이상 경과한 도시공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한다.

④ 도시공원 평가에서 고려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도시공원의 이용편의성, 환경성, 지속성, 확보 적정성, 기능과 활용성
2. 그 밖에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- ⑤ 도시공원 평가는 현장조사 및 설문 등을 통한 직접조사와 자료, 통계, 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.
- ⑥ 제3항에서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공원의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.

제3조의3(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·변경에 따른 공표)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

제3조의4(공원녹지정보체계의 구축·운영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공원녹지정보체계(이하 “공원녹지정보체계”라 한다)를 구축·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전국 공원·녹지 현황에 관한 자료
2. 도시공원 평가에 관한 자료·정보
3. 그 밖에 공원녹지 확충·관리 및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·정보
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원녹지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·운영을 위

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원녹지정보체계의 구축·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정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.

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공원녹지정보체계에 입력하거나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
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제9호마목”을 “제10호마목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“조경시설·휴양시설·유희시설·운동시설·교양시설·편익시설·도시농업시설”을 “조경시설·휴양시설·유희시설·운동시설·교양시설·편익시설·도시농업시설·재난관리시설”로, “제9호”를 “제10호”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조경시설·휴양시설·유희시설·운동시설·교양시설·편익시설·도시농업시설”을 “조경시설·휴양시설·유희시설·운동시설·교양시설·편익시설·도시농업시설·재난관리시설”로, “제9호”를 “제10호”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“제9호마목”을 “제10호마목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8호 중 “유원시설”을 “테마파크시설”로, “도시농업시설”을 “도시농업시설 및 재난관리시설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0호 전단 중 “제9호마목”을 “제10호마목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13호(중전의 제12호) 중 “조경시설·

휴양시설·교양시설·편익시설”을 “조경시설·휴양시설·교양시설·편익시설·재난관리시설”로, “제9호”를 “제10호”로 한다.

12. 방재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도시 내 재난의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구호 활동 등에 적합한 시설로서 조경시설·휴양시설·유희시설·운동시설·교양시설·편익시설·재난관리시설 및 동물놀이터(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 또는 군의 조례로 설치를 허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)로 할 것

제11조제2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제9호다목”을 “제10호다목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“체육공원”을 “체육공원, 방재공원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제9호라목”을 “제10호라목”으로 한다.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의2(국가도시공원의 공원시설 부지면적 등 설치기준)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국가도시공원(이하 “국가도시공원”이라 한다)으로 지정된 경우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당 공원시설 부지면적 기준을 100분의 150 범위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

별표 1 제3호의 종류란 중 “유원시설”을 “테마파크시설”로, 같은 란 중 “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”을 “시설을”로 하며, 같은 표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재난관리시설	가.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나. 「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에
-----------	---

	걸린 환자 등의 진료 또는 격리를 위한 시설
별표 3 사목을	다. 그 밖에 각 목과 유사한 시설로서 재난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시설 아목으로 하고, 같은 표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사. 방재공원	해당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	제한 없음	제한 없음
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

별표 4 제2호바.의 공원시설 부지면적란 중 “40 이하”를 “40이하”로 하고, 같은 표 사목을 아목으로 하며, 같은 표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사. 방재공원	전부 해당	100분의 40이하
---------	-------	------------

부 칙

이 규칙은 2026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3조의2(도시공원 설치 및 관리에 대한 평가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평가(이하 “도시공원 평가”라 한다)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</u> <u>1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</u> <u>2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</u> <u>3. 그 밖에 도시공원 및 녹지 분야에 대한 평가 역량을 갖춘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</u> <u>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.</u>

<신 설>

③ 도시공원 평가는 설치 후 1년 이상 경과한 도시공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한다.

④ 도시공원 평가에서 고려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도시공원의 이용편의성, 환경성, 지속성, 확보 적정성, 기능과 활용성

2. 그 밖에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
⑤ 도시공원 평가는 현장조사 및 설문 등을 통한 직접조사와 자료, 통계, 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⑥ 제3항에서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공원의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.

제3조의3(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·변경에 따른 공표)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

<신 설>

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
른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및 제
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
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1개
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인터넷
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

제3조의4(공원녹지정보체계의 구
축·운영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
법 제10조의2에 따라 공원녹지
정보체계(이하 “공원녹지정보
체계”라 한다)를 구축·운영하는
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
는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전국 공원·녹지 현황에 관한
자료

2. 도시공원 평가에 관한 자료·
정보

3. 그 밖에 공원녹지 확충·관리
및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하여
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
인정하는 자료·정보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원녹지
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·운영
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
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원녹지

제9조(공원시설의 설치·관리기준) ①법 제19조제7항에 따라
 공원시설은 도시공원의 기능을
 다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
 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해야
 한다. 이 경우 제5호나목, 제10
 호 전단 및 제12호에 따라 설치
 하는 별표 1 제9호나목의 무인
 동력비행장치 조종연습장은 별
 표 3의2에 따른 설치 및 관리기
 준을 준수해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4. 별표 3의 근린공원 중 근린생
 활권 근린공원 및 도보권 근

정보체계의 구축·운영에 관한
업무를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수
행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
정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.

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
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
의2제2항에 따라 관련 자료 또
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
에는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공
원녹지정보체계에 입력하거나
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
여야 한다.

제9조(공원시설의 설치·관리기
 준) ①-----

 ----. -----

 ----- 제10호나목-----

 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-----

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
원시설은 주로 일상의 옥외
휴양·오락·학습 또는 체험
활동 등에 적합한 조경시설·
휴양시설·유희시설·운동시
설·교양시설·편의시설·도
시농업시설 및 별표 1 제9호
에 따른 그 밖의 시설(가목,
나목 및 마목은 제외한다)로
하며, 원칙적으로 연령과 성별
의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도
록 할 것. 다만, 휴양시설 중
수목원의 시설로서 「수목원
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
한 법률」 제2조제1호 각 목
의 시설의 경우에는 법 제19
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
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
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
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
군수(이하 “공원관리청”이라
한다)가 관할 도시공원위원회
(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되지
않은 경우에는 「국토의 계획
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13
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

----- 조경시설 ·
휴양시설 · 유흥시설 · 운동시
설 · 교양시설 · 편익시설 · 도
시농업시설 · 재난관리시설 -
----- 제10호

[illegible]

5.

조경시설 ·

휴양시설 · 유흥시설 · 운동시

설 · 교양시설 · 편익시설 · 도

시농업시설 · 재난관리시설

제10호

가. (현행과 같음)

나. ----- 제10호마목-----

[illegible]

6.·7. (현행과 같음)

8. _____

_____테마파크

시설

_____도시농업시

설 및 재난관리시설

9. (현행과 같음)

10. -----

제외한다)·유희시설·운동시설·교양시설(옛무덤, 성터, 옛집, 그 밖의 유적 등을 복원한 것으로서 역사적·학술적 가치가 높은 시설, 공연장, 전시장, 과학관, 미술관, 박물관 및 문화예술회관으로 한정한다)·편익시설, 동물놀이터(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 또는 군의 조례로 설치를 허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, 별표 1 제9호마목의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연습장(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 또는 군의 조례로 설치를 허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 및 같은 호 바목의 시설[공원관리청이 관할 도시공원위원회(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·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·군·구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)의 심의를 거쳐 체육공원의

제10호마목-

기능 수행에 지장이 없고 국제경기장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한정한다]로 하되, 원칙적으로 연령과 성별의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. 이 경우 운동시설에는 체력단련시설을 포함한 3종목 이상의 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한다.

11. (생략)

<신설>

12. 법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에 따른 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시설·휴양시설·교양시설·편익시설 및

-----.

11. (현행과 같음)

12. 방재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도시 내 재난의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구호 활동 등에 적합한 시설로서 조경시설·휴양시설·유희시설·운동시설·교양시설·편익시설·재난관리시설 및 동물놀이터(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 또는 군의 조례로 설치를 허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)로 할 것

13. -----
-- 조경시설·휴양시설·교양시설·편익시설·재난관리시설 --- 제10호-----

별표 1 제9호에 따른 그 밖의 시설(가목 및 나목은 제외한다)로 할 것 ②·③ (생략) 제11조(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) ① (생략) ②다음 각 호의 공원시설은 각 호에서 정한 도시공원에만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, 제5호, 제8호, 제11호 및 제12호의 공원시설은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 또는 군의 조례로 해당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공원의 면적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. 1. ~ 10. (생략) 11. 별표 1 제9호다목에 따른 동물놀이터: 다음 각 목의 도시공원 가. (생략) 나. 문화공원, <u>체육공원</u> 및 법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에 따른 공원 12. 별표 1 제9호라목에 따른 보호회관: 다음 각 목의 도시공원	----- ②·③ (현행과 같음) 제11조(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10. (현행과 같음) 11. ----- <u>제10호다목</u>----- ----- -- 가. (현행과 같음) 나. ----- <u>체육공원, 방재공원</u> ----- ----- 12. ----- <u>제10호라목</u>----- ----- --
---	--

가.·나. (생략) ③ ~ ⑨ (생략) <u><신설></u>	가.·나. (현행과 같음) ③ ~ ⑨ (현행과 같음) <u>제14조의2(국가도시공원의 공원</u> <u>시설 부지면적 등 설치기준) 법</u> <u>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같은 조</u> <u>제1항에 따른 국가도시공원(이</u> <u>하 “국가도시공원”이라 한다)으</u> <u>로 지정된 경우 제11조제1항제1</u> <u>호에 따른 해당 공원시설 부지</u> <u>면적 기준을 100분의 150 범위</u> <u>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</u>
--	---